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4나12305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4나12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 17 선고 2021가합124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문성관, 박현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변론종결 2024. 6. 19.

판결선고 2024. 8.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 17. 선고 2021가합124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4.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L(M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으로 1, 2차 매매계약에 관여)은 원심에서, “(매매계약 당시) 다리공사 확장으로 인해서 하천에 있는 토지 몇 백 평정도 수용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을 거쳐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호, 판사 박동복, 판사 송유림